

2 장학제도 등

정주 외국인 등 중 가정 생활 형편 등에 의한 경제적 이유로 진학이나 재학이 곤란한 사람은 주로 다음과 같은 장학금 제도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현 장학금

① 히로시마현 고등학교 등 장학금

대상자	보호자 등이 히로시마현 내에 주소지가 있고 경제적 이유로 학업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고등학생 등
급부·대부 구분	대부
대부금의 종류	【입학 준비금】 고등학교 등 진학을 희망하는 중학교 등 3 학년생을 대상으로 입학 전에 대부 【학업 장학금】 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매월 대부
대부 요건, 대부 금액 등의 자세한 내용은 학생이 재학하는 고등학교 등 또는 아래 문의처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② 고등학교 등 배움의 변혁 환경 충실 장학금

대상자	주민세 소득률이 비과세인 세대의 고등학생 등으로 고등학교 등에서 수업에 사용하는 학생용 ICT 단말기를 보호자 등의 부담으로 구매 등을 하는 자
급부·대부 구분	급부
급부 대상자에게 매년 7 월 경(사립은 9 월 경) 자세한 안내 등을 배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생이 재학하는 학교 또는 아래의 문의처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히로시마현 교육위원회 사무국 교육지원추진과 기획조정계
 히로시마시 나카구 모토마치 9-42
 ☎082-513-4996

③ 고등학교 정시제 과정 및 통신제 과정 수학장려금

대상자	고등학교 정시제 과정 및 통신제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경제적 이유로 현저하게 학업이 곤란한 자로 또한 경상적 수입을 얻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급부·대부 구분	대부
대부 요건, 대부액 등에 대해서는 학생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그 외의 장학금

①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

HP: <https://www.jasso.go.jp/index.html>

대상자	학교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단기대학·대학(학부)·대학원· 고등전문학교·전수학교(고등과정·전문과정)에 재학하는 학생
급부·대부 구분	급부·대부
대상 인원, 지급액, 반환 방법 등의 자세한 내용은 직접 소속한 학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공익재단법인 교통고아 육영회

대상자	보호자가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장애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경제적으로 교육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으로 '고등학교 또는 고등 전문학교학생', '대학 장학생', '대학원 장학생', '전문학교 및 각종 학교 장학생'이 있습니다.
외국 국적인 분	이하의 재류자격으로 반환 완료까지 일본에 영주하는 것이 명백한 분 법정 특별영주자,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정주자
급부·대부 구분	대부
대상 인원, 지급액, 반환 방법 등의 자세한 내용은 직접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공재) 교통고아 육영회
도쿄도 지요다구 히라카와초 2-6-1 히라카와초 빌딩 3층
☎03-3556-0773 (직통)
☎0120-521286 (프리다이얼)

③ 사회복지법인 히로시마현 사회복지협의회

《교통고아 취학장려금 급부사업》

대상자	교통사고로 부모 또는 그 어느 쪽을 잃은 취학 중의 아동 및 학생으로 경제적 이유로 취학이 어렵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급부·대부 구분	급부 (연 1 회)
대상 인원, 지급액 등의 자세한 내용은 직접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사복) 히로시마현 사회복지협의회
 히로시마시 미나미구 히지야마혼마치 12-2
 ☎082-254-3411

《생활복지자금 대부(교육지원자금)》

대상자	저소득 가구로 경제적 이유로 고등학교, 단기대학, 대학 또는 고등전문학교에 진학 또는 재학이 어려운 가구 (단, 주민표 등을 통해 현재 주소에 6 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장래에도 영주할 확실한 예정이 있어야 합니다.)
급부·대부 구분	대부
대상 인원, 대부액, 반환 방법 등의 자세한 내용은 직접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제도에 관한 것》
 (사복) 히로시마현 사회복지협의회 생활지원과
 ☎082-254-3413
 《대출 상담창구》
 거주하시는 지역의 시·구·정 사회복지협의회

④ 공익재단법인 조선장학회

대상자	한국인·조선인 학생(한국적·조선적)으로 성적이 우수하고 학비 지급이 곤란한 자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자 1 일본의 각 고등학교(고등전문학교, 중등교육학교의 후기 과정, 특별지원학교를 포함)에 재학 2 일본의 대학 학부(단기대학도 포함) 및 대학원의 정규 과정 (통신 과정은 제외)에 재학
급부·대부 구분	급부
대상 인원, 지급액, 반환 방법 등의 자세한 내용은 직접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본부 : 도쿄도 신주쿠구 니시신주쿠 1-8-1
☎03-3343-5757
H P : <http://www.korean-s-f.or.jp/>

⑤ 공익재단법인 한국교육재단

대상자	1 한국 국적으로 또한 일본의 영주권을 보유하고 일본 국내의 고교·대학·대학원 중 어느 하나에 재학 중인 만 30 세 이하인 자 2 일본 국적 소지자(귀화한 자를 포함)로 한국학을 전공하고 한국어능력시험에서 3 급 이상의 합격자.
급부·대부 구분	급부
지급액 : 고교생 120,000 엔, 대학생 500,000 엔, 대학원 1,000,000 엔, 응모 자격 등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문의처

(공재) 한국교육재단
도쿄도 미나토구 미타 4-6-18 6 층
☎03-5419-9171
H P : <https://www.kref.or.jp/>

㉔ 공익재단법인 히로시마현 한국장학회

대상자	현 내에 거주하는 한국인으로 전문학교·대학에 재학하는 자
급부·대부 구분	급부
대상 인원, 지급액 등의 자세한 내용은 직접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공재) 히로시마현 한국장학회 히로시마시 히가시구 히가시카니야초 7-9 ☎082-264-2345
-----	---

(3) 고등학교 등 취학 지원금

■ 공립고등학교

대상자	고등학교 등에 입학한 학생 단, 다음 분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 고등학교 등을 이미 졸업한 적이 있는 학생이나 3 년 (정시제·통신제는 4 년) 이상 재학 중인 학생 (이전에 고등학교 등에 재학한 기간이 있는 경우는 그 기간도 포함.) 2 전공과의 학생이나 과목이수생, 청강생 3 보호자 등 전원의 ‘과세표준액(과세소득액) × 6%-시정촌민세의 조정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30 만 4,200 엔 이상인 가구 (※)의 학생 ※연간 소득 기준은 4 인 가족 기준으로 약 910 만엔 이상의 세대
지급액	수업료 (수강료) 상당액 단, 고등학교 등 취학지원금은 학교 설치자가 학생 본인을 대신하여 국가에서 수급하여 수업료에 총당하는 것이므로 학생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등학교 등 취학 지원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 4 월 입학 시(가을학기 입학자는 10 월) 학교에서 신청서 등을 배부하므로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마이넘버 카드 복사본 등)를 첨부하여 학교로 제출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처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히로시마현 교육위원회 사무국 교육지원추진과 취학지원계 히로시마시 나카구 모토마치 9-42 ☎082-222-3015
-----	---

(4) 고등학생 등 장학 급부금

■ 국공립고등학교

대상자	당년 7월 1일(기준일) 현재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자 1 보호자 등 전원의 시정촌민세 소득할액이 비과세일 것 2 보호자 등이 히로시마현 내에 거주하고 있을 것 3 학생이 취학 지원금 지급 대상인 국공립고등학교 등에 당년 7월 1일 현재 재학하고 있을 것
고등학생 등 장학 급부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매년 7월 경에 학교에서 신청서 등을 배부하므로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에 제출해 주십시오. 지급액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처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히로시마현 교육위원회 사무국 교육지원추진과 취학지원계 히로시마시 나카구 모토마치 9-42 ☎082-222-3015
-----	--

(5) 수업료의 감면

■ 공립고등학교

대상자	수업료 등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및 교육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감면액	수업료(수강료) 전부 또는 일부
감면액, 절차 등에 대해서는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4), (5) 에 대해서는 사립고등학교 등(일부 전수학교, 각종 학교를 포함)에서도 동일 또는 유사한 제도가 있습니다. 절차 등에 대해서는 학생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 등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